

제28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2. 3. 22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미 래 · 복 지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2년 3월 22일
전문위원 허 은 옥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2 - 34
- 나. 발 의 자: 윤유선 의원 외 6명
- 다. 발의일자: 2022년 3월 11일
- 라. 회부일자: 2022년 3월 15일

2. 제안이유

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이 별도 제정·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 기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에서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(안 제1조)
- 나. 용어의 정의에서 제1호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제2호 대안교육의 정의를 삭제하였으며, 제3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함(안 제2조)

다.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(안 제10조)

라.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의 공공시설 이용권리 보장 조항을 삭제함
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

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해당부서: 아동청소년과

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2. 3. 11. ~ 3. 16.) 결과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취지

-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학습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안 제1조(목적) 상위법 조항 및 “학교 밖 청소년에게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” 문구 삭제

- 학교 밖 청소년, 대안교육, 대안교육기관은 상위법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

· 학교 밖 청소년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,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,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가목~다목

· 대안교육: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-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

· 대안교육기관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 -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

○ 안 제2조(정의) 제2호 대안교육, 제3호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삭제하고 (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“대안교육”, “대안교육기관”에 대하여 조례상의 정의와 차이가 발생) 학교 밖 청소년,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 함 - 위 학교 밖 청소년, 대안교육, 대안교육기관의 상위법 관련 규정 참조

○ 안 제10조(대안교육기관 지원)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

○ 안 제11조(공공시설 이용권) 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공공시설 이용 권리와 편의보장 관련 조항 삭제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는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5년 8월 제정·시행하였으며,
- 조례 제정 당시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했던 대안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 학습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일부 포함하였음
- 그러나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이 2021년 1월 제정되고,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정의 등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음
- 이에 별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,
-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정 및 이번에 삭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과는 일부 구분되는 내용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

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학교 밖 청소년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.
 - 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
 -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
 - 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3. 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”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, 교육지원,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,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, 지원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3. 23.>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□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87호, 2021. 1. 12., 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대안교육”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.
2. “대안교육기관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시설등”이라 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